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2 - 41호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7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정이유

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) (국적 취득 소요 제반 비용 지원)

4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<u>2022년 9월 14일까지</u>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 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담당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l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45

발의연월일: 2022. 9. 7.

발 의 자 : 전홍표・김남수・김묘정・김상현・김우진・문순규

박강우·박선애·박해정·백승규·서영권·성보빈 심영석·오은옥·이우완·이원주·이종화·이해련 정길상·정순욱·진형익·최은하·최정훈·한상석

한은정・황점복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) (국적 취득 소요 제반 비용 지원)

3. 참고사항

가. 신 • 구조문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 시험 교육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(생 략)	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
	<u> </u>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	2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2.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
	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
	<u>또는 일부 및 귀화 시험 교육 지</u>
	<u>원</u>
<u>12</u> . (생 략)	<u>13</u> 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참고

관계 법령

■ 국적법

- **제2조(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(國籍)을 취득한다.
 - 1. 출생 당시에 부(父)또는 모(母)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
 - 2.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
 - 3.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
 -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(棄兒)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- 제3조(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(이하 "외국인"이라 한다)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(認知)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 - 1.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미성년일 것
 - 2.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- 제4조(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(歸化許可)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 -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. <개정 2017. 12. 19.>
 -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 다만, 법무부장관은 연령, 신체적・ 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

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9.>

-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 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9.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, 심사,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2. 19.> [전문개정 2008. 3. 14.]

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

1.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재한외국인"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2. "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"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결혼이민자"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 국인을 말한다.

■ 다문화가족 지원법 (약칭: 다문화가족법)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 - 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1 2. 2. 1., 2015. 12. 1.>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2. 2.

- 제3조의2(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 - 1.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
 - 2.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3의2.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
 - 4.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., 202 0. 5. 19.>
 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4. 4.]

제6조(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 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(아동·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고,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·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

- 4. 4., 2016. 3. 2.>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2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 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,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1. 4. 4., 2017. 12. 12.〉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,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있다. <신설 2015. 12. 1.. 2017. 12. 12.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, 금융정보 등의 제공, 조사·질문 등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〈신설 2015. 12. 1., 2017. 12. 12.〉
-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., 2017. 12. 12.>
-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4. 4., 2015. 12. 1., 2017. 12. 12.>
- 제10조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5. 12. 1.>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, 12, 1.>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2., 2015. 12. 1.>
- ④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・청소년 보육・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・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 12. 1.〉

[제목개정 2015. 12. 1.]

참고 현행 조례

■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외국인주민"이란 창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.
- 2. "다문화가족"이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3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- 4. "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"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)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국인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
 - 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 - 가.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
 - 나. 결혼이민자등의 사회 · 경제적 자립 지원
 - 다.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
 - 라.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
 - 마.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
 - 3.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
 - 4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
 - 5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6.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과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

다.

- **제6조(지원대상)**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.
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<개정 2021. 3. 31.>
 - 2. 외국인주민이 지역 내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<개정 2021.
 - 3. 31.>
 - 3.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<개정 2021. 3. 31.>
 - 4. 각종 문화·체육행사의 개최
 - 5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사업<개정 2021. 3. 31.>
 - 6.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사업(취학 전 학습 지원,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다)<신설 2021. 3. 31.>
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종전의 제6호에 이동 2021. 3. 31.]

-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- 2.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
- 3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 · 훈련 및 일자리 연계
- 4.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- 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·지원
- 6.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· 건강에 대한 교육 등의 서비스

지원

- 7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 · 번역 서비스의 제공
- 8.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<개정 2021. 3. 31.>
- 9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의 취학 전 학습 지원, 한국어 언어능력, 교육 프로그램 지원<신설 2021. 3. 31.>
- 10. 중도입국자녀의 사회·문화 적응 지원<신설 2021. 3. 31.>
- 11. 결혼이민자(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)의 고향방문 행사를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와 현지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

[종전의 제9호에 이동 2021. 3. 31.]

1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. 3. 31.]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

- 제8조(협의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1. 3. 31.>
 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협의회는 소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20.6.30.>
 -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(외국인주민)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교육청, 경찰서,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, 창원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<개정 2021. 3. 31.>
 - 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 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관련 기

- 관·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
- 3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 족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다문화(외국인주민)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- **제9조(협의회의 기능)**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 - 3.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
 - 4.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10조(위원장)**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**제11조(회의)**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1. 3. 31.>
- **제12조(의견청취 등)**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3조(위원의 수당)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

않다.<개정 2021. 3. 31.. 2022. 4. 29.>

- **제14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 - 2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<개정 2021. 3. 31.>
 - 3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 - 5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 - 6.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 - 7. 그 밖에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

- **제15조(시책사업 추진)**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현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6조(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 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21. 3. 31.>
 -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센터의 설치·운영을 「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」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센터에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

-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개정 2021. 3. 31.>
-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신설 2021. 3. 31.>
- ⑤ 센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
[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. 3. 31.]

⑥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.<개정 2021. 3. 31.>

[종전의 제5항에 이동 2021. 3. 31.]

- **제17조(업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수시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- 제18조(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9조(다문화주간)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창원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,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.<개정 2021. 3. 31.>
 -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1. 기념식 및 문화・예술・체육행사

- 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- 3. 명예시민증 수여. 유공자·단체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) 격려
- 4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,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 워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(포상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·단체,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1. 3. 31.>
 -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창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- **제21조(명예시민)**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 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.
 - 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 「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